

## 중국 <인터넷문화관리임시시행규정> 주요내용

---

- 문화부에서 인터넷문화발전의 관리방침, 정책과 계획을 책임지고 제정하며, 전국 인터넷문화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 관련법률, 법규와 규정제도에 근거하여 상업성인터넷문화관련회사를 대상으로 허가제, 비상업성인터넷문화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제 실행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분의 역할
  - 해당 지역내 인터넷문화활동의 일반관리업무를 책임
  - 해당 지역내에서 상업성인터넷문화활동 업무를 신청하는 회사에 대하여 1차심사 진행
  - 해당 지역내에서 비경영성(비수익)인터넷문화활동 업무를 신청하는 회사에 대하여 심사확정
  - ※ 상업성인터넷문화활동은 해당 지역에서 1차 심사 후 문화부에서 2차(최종) 심사
- 행정구역 내 인터넷문화활동에서 국가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처벌
- 상업성인터넷문화회사 설립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분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분에서 1차 심사 통과후 문화부에 제출하여 심사비준 취득
- 상업성인터넷문화회사 설립 신청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문화행정부분에서 1차 심사
  - 1차 심사 합격 후 문화부의 최종 심사 진행
  - 비준시 <네트워크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기각된 것은 기각 사유 설명
- 인터넷문화회사의 인터넷문화제품 수입
  - 수입 내용을 문화부에 제출하여 내용 심사
  - 문화부는 30일 이내 허가 승인 혹은 기각 결정 후 통지
- 허가 취득없이 경영성인터넷문화활동에 종사시 처벌

## 《인터넷 문화관리 임시시행 규정》 - 번역본 전문

제1조 인터넷문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문화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중국 인터넷 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및 기타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문화상품은 인터넷을 통하여 생산, 유포, 유통되는 문화상품으로 주로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 (1) 음반·영상물
- (2) 게임물
- (3) 공연프로그램
- (4) 예술품
- (5) 애니메이션 및 기타 문화상품

제3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문화활동은 인터넷 문화상품 및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주로 아래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 (1) 인터넷문화상품의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 방송 등의 활동
- (2) 문화상품을 인터넷 상에 올리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유선전화, 이동전화, 라디오, TV, 게임기 등 사용자의 단말기로 발송되어 열람, 감상, 사용 또는 다운로드되는 유포 행위
- (3) 인터넷문화상품의 전시 및 경기 등

인터넷 문화활동은 상업성과 비상업성으로 나뉜다. 상업성 인터넷 문화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접속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전자상거래, 광고, 후원 등의 형식으로 이익을 취하여 인터넷문화상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비상업성 인터넷 문화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사용자

에게 인터넷문화상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본 규정에 지칭하는 인터넷문화회사는 문화행정기관과 전신관리기구의 기준을 받아 인터넷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업체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인터넷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헌법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국민과 사회주의에 대한 공헌을 방향으로 삼아 우수한 민족의 우수문화를 널리 알리고, 민족문화소질을 제고하며, 경제발전 촉진 및 사회발전에 유익한 사상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인터넷문화발전의 관리방침, 정책과 계획을 책임지고 제정하며, 전국 인터넷문화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하여 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실시하고, 비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문화 내용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문화활동의 일반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해당 지역내에서 상업성 인터넷문화활동을 신청하는 회사에 대해 1차 심사를 진행하고, 비상업성 인터넷문화활동을 신청하는 회사에 대해 심사 기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해당 지역내 인터넷 문화활동에서 국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제7조 인터넷문화회사 설립 신청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주소, 조직기구 및 정관

- (2) 명확한 인터넷문화활동 범위
- (3) 인터넷문화활동에 부합하고, 자격을 갖춘 어부관리인원 및 전문 기술요원
- (4) 인터넷문화활동에 부합하는 자금, 설비, 업무장소 및 경영관리기술방안
-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인터넷문화회사 비준은 위의 조건 외에 인터넷 문화회사의 총 수량 및 전체 구도와 배치의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성 인터넷문화회사가 설립을 소제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기관화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기관화행정기관에서 1차 심사 후에 문화부에 보고하고, 최종 심사 비준을 신청한다.

비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 설립은 소제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문화부에 보고한다.

제9조 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 (2) 기업명칭 사전확인 통지서 또는 영업허가증, 정관
- (3) 자금 출처, 액수 및 신용증명문서
- (4)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및 주요 경영관리인원, 전문기술인원의 자격 증명과 신분증명문서
- (5) 사무소 장소 사용권한 증명문서
- (6) 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기타 문서

사업성 인터넷문화회사 설립 신청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은 신청접수 30일 내에 1차 심사를 마치고, 1차 심사에 합격되면 문화부 최종 심사 비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합격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화부에서는 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준된 것은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기각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비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 (2) 회사 정관
- (3) 자금 출처, 액수 및 신용증명자료
- (4)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및 주요 경영관리인원, 전문기술인원의 자격 증명, 신분증명문서
- (5) 사무소 장소 사용권한 증명문서
- (6) 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기타 문서

비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 설립 신청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은 신청접수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비준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신청이 기각된 회사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설명해야한다.

제11조 인터넷문화회사 설립 신청을 한 회사는 비준을 받은 후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또는 비준문서를 가지고,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재지 전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기관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인터넷문화회사는 해당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눈에 띄는 곳에 문화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비준문서번호를 명시하고, 국무원 정보산업주관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발급한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인터넷문화회사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본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진행하며, 문화행정기관의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또는 비준문서를 소지하고 해당 전신관리기구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제14조 인터넷문화회사가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인터넷문화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기관화행정기관에서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한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서 인터넷정보서비스 업무경영허가증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의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은 반드시 문화부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상업성 인터넷 문화회사가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도 기업 등록일로부터 180일 내에 인터넷문화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경우 문화부 또는 1차 심사기관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은 문화부에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이를 통지한다.

비상업성 인터넷 문화회사가 비준문서를 취득하고도 기업 등록일로부터 180일 내에 인터넷문화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경우 심사 비준기관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은 비준문서를 취소시키고,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이를 통지한다.

제16조 인터넷문화회사에서 인터넷문화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문화부의 내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부는 내용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 통보한다. 비준하는 경우에는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설명한다.

제17조 인터넷문화회사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상품을 제공할 수 없다.

- (1)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
-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에 해가 되는 것
- (3)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국가안전에 손상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것
- (4) 민족적 감정을 선동하여 민족단결을 해치거나 민족풍습, 습관을 침해하는 것
- (5) 사교나 미신을 홍보하는 것
- (6)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것
- (7) 음란, 도박, 폭력을 홍보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것
- (8)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 (9) 사회의 공공도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손상하는 것
-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규정에서 금지한 기타 내용이 있는 것

제18조 인터넷문화회사가 제공하는 문화상품이 국민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터넷문화회사는 민사 책임을 진다.

제19조 인터넷문화회사는 심사제도를 실시, 전문적인 심사위원이 인터넷문화상품을 심사하도록 하여 인터넷문화상품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문 심사위원은 사전에 교육을 받아 업무자격을 취득해야한다.

제20조 인터넷문화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문화상품에서 본 규정의 제17조에서 나열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제공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 및 문화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인터넷문화기관은 제공하는 문화상품 내용 및 시간, 인터넷 주소, 지역 등을 기록하여 60일 간 보존하여, 국기관련기관에서 법에 따라 조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상업성 인터넷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에서 《무허가경영 조사 처리 취제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상업성 인터넷문화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행정부서에서 기한된 날자 내에 수정토록 명령하며,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문화활동을 정지시키고 1,000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상업성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하면서 본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기관화행정기관이 경고하고, 기한내에 수정토록 하며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상업성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하면서 본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기관화행정기관이 경고하고,기한내에 수정토록 하며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4조 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가 본 규정 제17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문화상품을 제공하거나 문화부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은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최고 30,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엄중한 경우에는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비상업성 인터넷문화회사가 본 규정 제17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



함한 인터넷문화상품을 제공하거나 문화부의 기준을 거치지 아니한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기관은 제공 정지 명령을 내리고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태가 엄중한 경우에는 기준문서를 취소한다.

제25조 본 규정 제21조를 위반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서 정정을 명령하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정정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

제26조 본 규정 실시 이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에 이미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한 회사는 본 규정 실시 시작일로부터 60일 내에 본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보충한다.

제27조 본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